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명칭 변경 및 지정제 전환〉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8822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명칭 변경 및 지정제 전환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명칭 변경 및 지정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명칭을 ‘우수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u>인증기준</u> 적합 여부 검토	5. ----- ----- <u>지정기준</u> ----- ----
<u><신설></u>	5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검토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인증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보급 및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지정이 -----
----- 지정
이 ----- 지정
신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

----- 지정표시-----.

⑤ ----- 우수 해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
----- 지정표시-----

-----.

⑥ -----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의 --- 지정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를 거쳐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

⑦ 지정의 ----- 지정기준-----
지정에 -----
-----.

제15조(지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내용-----
---. -----

-----.

② -----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 그 지정-----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u>인증을</u>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인증을</u>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u>인증기준</u>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u>인증표시</u>와 다르게 <u>인증표시</u>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u>해양교육프로그램</u>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5조제2항에 따른 <u>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u>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u>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u>을 받은 자 제29조(과태료) ① (생략)	-. ----- <u>지정</u> -----. 1. ----- -- <u>지정</u>----- 2. ----- <u>지정기준</u>----- 3. ----- <u>지정표시</u>----- <u>지정표시</u>----- 4. ----- <u>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u>----- 제25조(청문)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취소</u> 제27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u>-----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u>인증</u> 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에 <u>인증표시</u> 를 하거나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u>우수</u> <u>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u> ---- -- <u>지정표시</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 및 내용, 인력, 시설 및 안전, 평가 및 운영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 것이 요구(첨부1 참고)되는데, 이는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려는 것임.

[표] 현행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규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
(제14조제1항)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능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①해양교육센터의 검토, ②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 그런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따라 불편한 인증을 폐지하는 등 인증규제를 개선하고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¹⁾하였고,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경우 프로그램의 우수성, 인력의 전문성 등 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에 인증제²⁾보다는 지정제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현행법상 ‘지정’과 ‘인증’은 법체계적으로 보면 ‘지정’은 주로 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지원·육성 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등으로 사용되고, ‘인증’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³⁾, 또는

1) 2024. 2. 27.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함

2) 인증제란 국가·국제표준 부합 여부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3)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15.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⁴⁾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됨.

□ 이에 개정안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명칭을 ‘우수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정비하려는 것으로, 인증과 지정제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현황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우수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은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폐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위원회⁵⁾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수해양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지정하기에는

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354

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현행과 같이 해양교육센터⁶⁾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프로그램 지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제도로 법 취지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8

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첨부 1**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인증기준
1. 구성 및 내용	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강의·실습 시간, 진행방법 등을 포함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는 내용일 것 다.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라.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2. 인력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수요원과 운영전담요원을 각각 보유할 것
3. 시설 및 안전	가. 해양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갖출 것 나. 비상구·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것 다. 보험가입 등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을 것 라. 식당 또는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숙박 시설에는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를 둘 것
4. 평가 및 운영	가. 평가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을 것 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을 것 라.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을 마련했을 것